

(제75회 - 산업건설위 부록)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의 주요 골자는 안제15조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것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용의 75%로 산정한다"라고 수정하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년말 현재 경남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 내역을 보면
진해시 98만원
창원시 110만원
마산시 110만원
진주시 100만원인데 비하여

우리시는 167만원으로 정하여 최고 70% 최저 51%가 높게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주로 최근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함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 마다 부담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비 관계 때문인데 하수도법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하수도법 32조에

“비용을 부담시키되 부담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여 시,군 실정에 맞게 적정하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군에서는 조례를 정할 시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정하였던 것입니다. 지침대로 하더라도

다른 시,군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괜찮으나 우리시는 위와 같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안은 다른 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기준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수정안을 작성할 시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의 75%라는 것이 기준이 될 수 있으나 ,

즉,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면 건설비용이지, “75%라는 것은 무엇이나”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만, 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하지 않고 위임한 것은 적정한 선에서 정하라는 취지이므로 어떤 비용의 75%라고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동 의원은 이와 비슷하게 규정한 유형이 있는지 조사를 해 본 바 하수도부담금에는 이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으나

서울특별시주거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 제33조에 보면 토지가격을 정할 때

“② 제1항의 토지매각대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정한 금액에서 2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는 등

일정비율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서 사용하는 사례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과 같이 75%로 하였을 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산정보고서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하면 118만원으로 산출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정도면 타 시와 비교하여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주민의 상대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이번 수정안은 법리

(제75회 - 산업건설위 부록)

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하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천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수정안

원안	개정안	수정안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 하수도(하수관거 및 펌프 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 설)의 신·증설에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비, 환경 평가비, 용지비(지장물보 상비 포함), 공사비(부대 공사비 포함), 시공감리 비,기타부대비로 한다. 다 만, 하수관거는 개발지역 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까 지유입시키기 위한 하수 관거설치비로 한다.</p>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 종말처리장 건설비용으로 산정 한다.</p>	<p>제15조(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 한 원인자부담금은 하수 종 말 처 리 장 건 설 비 용 의 75%로 산정한다.</p>